

< 이자소득 >

1. 이자소득 의의

개인이 타인에게 비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
(cf. 사업적으로 하는 금융업 : 사업소득)

2. 이자소득의 범위

(1) 각종 예금의 이자(신용계·신용부금의 이자 포함)

- 국내 · 국외 불문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

(2)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

1) 과세방법

- ① 2013. 2. 15 전에 체결된 계약분
 -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: 이자소득
 - 위 외의 것 : 과세 ×
- ② 2013. 2. 15 이후에 체결된 계약분
 -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, 다음의 경우는 과세 제외

·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
·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
·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

2) 이자소득으로 보는 보험차익의 계산

$$\text{보험차익} = \text{보험금} - (\text{납입보험료} - \text{배당금수취액})$$

[비교정리] 보험차익 과세방법

구분	내용
저축성 보험	위 규정에 따름
보장성 보험	① 피보험자의 사망 · 질병 · 부상등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차익 : 과세대상 × ② 자산의 멸실 ·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차익 ㉠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: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㉡ 그 외의 경우 : 과세대상 ×

(3) 채권 ·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

1) 이자 : 발행자(내국법인, 외국법인, 국가, 지자체)와 무관하게 이자소득임

2) 할인액

- ① 회사채 : 이자소득 ○
- ② 국채 : 원칙 - 과세 ×

예외) 원금이 물가와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는 2015.1.1. 이후 발행되는 채권

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

(4) 채권 ·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
- ① 원칙 : 채권 · 증권의 매매차익은 과세 ×
② 환매조건부인 경우 : 이자소득 과세 ○

(5)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
- 동일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끼리 복리증진, 상호부조등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
- 1999.1.1. 이후 가입한 것만 과세(무조건 분리과세)

$$\text{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} = (\text{퇴직} \cdot \text{탈퇴로 인한 반환금} - \text{납입공제료}) + \text{반환금 추가이익}$$

(6) 비영업대금의 이익

- 1) 금전의 대여 - ① 사업성 ○(계속 · 반복적) : 사업소득
② 사업성 ×(일시 · 우발적) :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이익)
- 2) 비영업대금이익의 내용
① 원천징수세율 : 25%
② 수입시기 : 약정일과 지급일 중 빠른날
③ 채무자의 파산등 일부 회수 불가시 :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봄

(7)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는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

ex) 상업어음 할인료(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할인하고 받은 경우)

(8) 파생금융상품의 이자

3.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

(1)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

- 매입에누리 · 매입할인 · 외상매출금등 기일연장이자 · 장기할부 판매시 추가수령액

* 매입가액 = 총매입가액 - 매입에누리 - 매입할인

* 총수입금액 = 매출액 + 외상매출금등 기일연장이자 + 장기할부판매시 추가수령액

(2) 위약금·배상금등 법정이자

- ① 계약의 해약 ·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: 기타소득(법정이자도 포함)
② 위 외의 것 : 과세대상 제외 ×

4. 비과세 소득

- ① 공익신탁의 이익(학습 · 종교 · 자산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신탁 말함)
②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이자

5. 수입시기

수입시기	이자소득
① 지급 받은날 : 현금주의	·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 · 각종 예금의 이자 · 저축성 보험차익
② 약정에 의한 지급일	· 기명채권등의 이자 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③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지급일 중 빠른날	· 비영업대금의 이익 ·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사용대가 성격이 있는 것 · 파생금융상품의 이자
④ 특례	·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 · 증여되는 경우 : 상속개시일 · 증여일 ·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(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이 각각 귀속됨) -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

6. 이자소득금액의 계산

이자소득 총수입금액(비과세소득 · 분리과세소득 제외)
 (-) _____ (인정하지 않음)
 이 자 소 득 금 액